

제6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서면회의)

1. 회의일시 : 2016. 11. 23.(수)
2.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3. 참석위원 : 최성준 위 원 장
김재홍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4. 불참위원 : 없음

5. 회의내용

① 서면회의 사유

-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서면결의) 및 제14조의1(서면보고)에 의거, 의결사항 '가', '나', '다', 보고사항 '가'는 토론을 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됨

② 의결사항

가. 종합·중계유선방송사업자 변경허가 사전 동의에 관한 건 (2016-66(서)-249)

- 미래창조과학부의 (주)티브로드 중부방송 등 18개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장평유선방송의 변경허가에 대해 동의함을 원안대로 의결함

나.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2016-66(서)-250)

-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고시」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다. 방송법상 방송광고 법규위반 사업자 행정처분 수정에 관한 건 (2016-66(서)-251)

- 방송법 제73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를 위반하여 방송광고를 한 방송광고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함

피심의인	위반 법규	과태료 금액
(주)한국바둑방송	「방송법」 제73조제2항,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가목	750만원
(주)한국여론방송	「방송법」 제73조제2항,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가목	1,000만원
(주)정철미디어	「방송법」 제73조제2항,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가목	1,250만원
(주)내외경제티브이	「방송법」 제73조제2항,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가목 및 다목	1,000만원
(주)오씨비	「방송법」 제73조제2항,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가목	1,250만원
(주)타임투미디어	「방송법」 제73조제2항,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가목	1,500만원
(주)한국어린이방송	「방송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및 제2항제2호가목	1,750만원
(주)제이티비씨	「방송법」 제73조제2항,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가목	500만원

③ 보고사항

가.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와 관련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및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하위규정(고시)를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접수함